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11. 2. 23.

사단법인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근대5종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11.	2.	23.	정기이사회	제정
2013.	5.	21.	임시이사회	개정
2015.	2.	24.	임시이사회	개정
2017.	3.	9.	정기이사회	개정
2017.	10.	16.	정기이사회	개정
2018.	12.	5.	임시이사회	개정
2021.	1.	28.	정기이사회	개정
2021.	8.	27.	임시이사회	개정
2022.	3.	17.	임시이사회	개정
2022.	10.	8.	임시이사회	개정
2023.	2.	3.	정기이사회	개정
2023.	9.	10.	임시이사회	개정
2024.	11.	26.	임시이사회	개정
2025.	3.	6.	정기이사회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선발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2. “국가대표 지도자”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대한체 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및 대한근대5종연맹(이하“본 연맹”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근대5종 국가대표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총 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3. “국가대표 선수”는 체육회 또는 본 연맹이 국제종합경기대회(이하“종합대회”라 한다.) 또는 근대5종 국제대회(친선국제대회는 제외한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시리즈(결승 포함),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말한다. 이하“국제대회”라 한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임원”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말한다.
5. “트레이너”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체력, 기술, 심리, 영상분석 및 훈련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경기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본 연맹이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7. “경기 지도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

으로 본 연맹이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8.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자격 보유자를 말한다.

9. “강화훈련”은 본 연맹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 또는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장소 등에서 실시하는 합숙훈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기력향상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본연맹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2.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3.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5명 이상 13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출신 1명, 지도자 1명, 팀 관계자 1명, 시도종목단체 임원 1명, 비경기인 1명, 여성 1명 외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특성에 따라 세부종목 또는 남·여를 구분하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각의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요건) ① 위원회 위원은 정관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1개 위원회 범위내에서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② 회장과 친족인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근대5종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가대표 지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본 연맹 정관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대5종 육성대학이 단일 대학인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재적위원 50%를 초과하지 않게 동일대학 출신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연맹 정관 제15조제7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이 계류중인 심의 안전에 대해 심의 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종목별 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⑥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 관련 안전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안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위원은 2회의 임기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나, 국제스포츠 기구의 임원이거나, 국제기구 진출 시 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본연맹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3장 지도자

제11조(국가대표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본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경향위”라 한다.)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대표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본 연맹의 이사회에서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② 트레이너는 본 연맹의 경향위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트레이너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트레이너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본 연맹의 장이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국가대표이하 우수선수(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는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전문지도자(후보선수 포함)는 기선발된 선수 중 다수 선수 선발 지도자, 성적 상위 선수의 지도자 순으로 결과에 따라 경향위에서 심의·추천하면 본 연맹의 장이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

정한다.

⑤ 국가대표 강화훈련 외에 특수 목적으로 별도 프로젝트팀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지침으로 지도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본 연맹의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연맹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근대5종 지도경력 5년 이상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근대5종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근대5종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개인)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근대5종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근대5종 지도경력 2년 이상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개인)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근대5종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6. 세부종목코치는 해당 종목에서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④ 국가대표 지도자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 지도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선발 공고 후 여성 지원자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국가대표 트레이너 자격) ①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③ 우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개인)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시 임상경력에 20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제14조(경기임원의 선발 절차) ①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임원은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중에서 본 연맹 경향위의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추천하면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경기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 방법은 본 연맹 경향위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경기임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선발 절차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연맹 경향위의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1. 국가대표 선발을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팀으로 선발하는 경우
2.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정원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특별히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3.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 확정된 이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개선발을 할 수 없는 경우
- ④ 본 연맹 경향위가 제3항제1호의 경기임원을 선발할 경우 사전에 선발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 ⑤ 경기임원을 선발한 때에는 즉시 선발사유를 포함하여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이외의 종합대회의 경기임원 선발은 본 연맹 경향위의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결정한 후 체육회에 추천한다.
- ⑥ 근대5종 국제대회의 경기임원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경향위에서 심의, 추천하여 본 연맹의 장이 정한다.

제15조(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인원) ① 본 연맹 사업계획 및 체육회의 강화훈련 계획에 의거 선발 인원을 정한다.

제16조(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기준) ① 국가대표지도자(총감독,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 제1호, 제2호로 심의한다.

1. 지도 실적(국내.외대회 입상 실적) : 10점
단, 국가대표 선수 입상 실적, 국가대표 지도자 및 소속 지도자 동일하게 적용
 2. 지도 경력(지도 기간) : 10점
 3. 경기지도자 자격증 : 10점 (1급, 2급)
단, 심의기준은 1급을 기준으로 함.
 4. 국가대표 선수 경력(본인) : 10점
 5. 국제.국내대회 입상 경력(본인) : 10점
 6. 직전 소속 단체장 (시.도연맹회장, 회원종목단체장) 추천서(10점)
 7. 먼 점 : 40점
(해당 종목 평판 조사 가능)
 - ㉠ 지도력 및 리더쉽(10점)
 - ㉡ 자질 및 가치관(10점)
 - ㉢ 팀 운영능력(20점)
- ※ 운영계획서 PPT 발표

8.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서류 및 면접위원의 최고점과 최하점은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9.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은 서류심사(60) 및 면접심사(40) 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미만 지원자는 선발하지 않는다.<신설 2025. 3. 6.>

② 전담지도자(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선발기준은 제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제1항으로 하되, 선수·지도자 경력은 근대5종 경력만 적용하여 선발한다. 다만, 전문지도자(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는 제11조제4항을 따른다.

제17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 선수는 본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연맹의 경향위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일정 등 세부사항의 결정과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본 연맹의 장이 결정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본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정한 개인기록, 선발전 순위 및 각종 대회 누적 순위 등 근대5종 특성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③ 본 연맹의 장은 제6항의 선발을 제외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발일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국제근대5종연맹의 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와 감염병과 자연재해 등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고 지연에 대한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발 공고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 본 연맹의 장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본 연맹의 장은 종합대회의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근대5종 국가대표 선수로 체육회에 추천한다. 단, 종합대회의 출전권이 국가에 배당되어 해당 국가대표를 선발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선발하여 체육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 국가대표 훈련 소집 및 국제대회 출전 불응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없이 국가대표 선발순위에 따라 차순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다만, 차순위가 동률일 경우에는 경향위에서 심의하여 선발한다.

⑦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우수선수 육성이 요구될 경우, 기량 향상이 월등하다고 인정되는 선수에 한해 선발전과 상관없이 경향위에서 추천하며 이사회 심의·추천으로 본 연맹의 장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할 수 있다.

⑧ 국가대표 강화훈련 외에 특수 목적으로 별도 프로젝트팀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경향위의 심의후 이사회의 의결로 프로젝트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⑨ 이 규정에서 정한 국가대표 이외에 연령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 본 연맹의 경향위는 종목별대회의 특성에 따라 선발의 요건, 비율, 일정 및 경기력 지표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대표 선발) ① 국가대표 선발전은 최소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선발전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 및 경향위 위원의 추천 선발 인원은 총 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며,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7조제7항과 최근 1년 이내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결승 포함)대회에서 개인 3위 이내 입상 선수를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의 장이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선발된 선수는 추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대회성적, 향상도, 지도자 평가보고서, 경향위 회의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발전을 통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으로 선발함을 원칙하며, 세부종목 적용과 선발방식, 선발인원을 경향위에서 정한다.

2. 각 종목별 세부사항은 국제근대5종연맹 경기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며,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인원이 25명이 이상일 경우에는 예선전을 거쳐 18명을 선발하여 결승전을 실시하며, 결승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⑤ 경기기록분석을 통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및 연맹 주최대회(회장배, 문체부, 선수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체전 성적을 국제근대5종연맹 경기규정 세계랭킹(PWR) 적용하되, 국제대회 기록은 레벨 1, 국내대회 레벨 2(근대4종 레벨 3)를 적용하여 국가대표 선발 경향위 개최 전 최근 1년간 출전한 대회 중 상위 4개 대회 기록으로 경향위에서 선발 심의하여 본 연맹 장이 정한다. 다만,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선발은 국내대회 기록을 근대5종 레벨 1, 근대4종 레벨 2, 근대3종 레벨 3, 근대2종 레벨 4을 적용하며, 각 대회 부문별(근대2종, 근대3종, 근대4종) 참가선수 인원에 따라 1위의 점수를 달리 적용한다.

⑥ 부상 선수에 교체는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제19조(국제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 기준) ① 제17조제1항 따라 올림픽대회(아시안지역예선전)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는 선발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국가대표 선발전은 2회를 실시하되,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선발전을 실시하며, 국제대회 파견 선수와 강화훈련은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성적 순위로 하여 경향위에서 심의 후 본 연맹 장이 정한다. 다만, 국가대표 선발전 기간동안 국가대표 강화훈련은 현 국가대표선수를 대상으로 제2차 선발전 개최 전일까지 실시한다.

2.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순위는 세계랭킹(PWR) 레벨 1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가대표 선발 시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3. 제2차 선발전 참가선수는 제1차 선발전 성적 결과로 18명으로 제한한다.

② 올림픽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세계 랭킹(PWR) 순위

2. 올림픽 당해년도 및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결승포함) 1 ~ 3위 입상 상위자, 단, 월드컵 입상 순위가 동률일 경우 월드컵 결승이 우선한다.

3. 아시아 지역 예선전 순위

4. 올림픽 엔트리 제출 기한까지 파견선수를 최종 선발하며, 파견 대상자 중 부상 등으로 파견

선수 교체시에는 제17조제6항에 따라 상기 제1호내지 제4호에 따라 차순위 선수를 파견한다.

③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대회 아시아지역예선전 파견선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순

2. 파견 대상 중 부상등으로 파견선수 교체시에는 제17조제6항에 의거하여 제1호에 따라 차순위 선수를 파견한다.

④ 세계선수권대회와 월드컵(결승 포함),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올림픽대회 출전권 및 랭킹포인트 부여대회 파견은 제17조제7항과 제8항을 우선 적용하여 파견하되,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선발된 대상을 파견한다.

2. 제3항을 제외한 국제대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추천으로 경향위에서 심의 후 본 연맹장이 정한다.

3. (청소년, 유소년, 트라이애슬, 비아틀)세계선수권대회는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경향위에서 심의.의결하여 본 연맹의 장이 정한다.

4. 아시아(청소년, 유소년 등)선수권대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전임.전담지도자)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후 본 연맹 장이 정한다.

5. 파견 대상 중 부상등으로 파견선수 교체시에는 제17조제6항에 의거하여 차순위 선수를 파견한다.

6. 국가대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향위에서 심의.의결하여 정한다.

7.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월드컵 및 기타 국제대회 파견에 대해 일반선수가 출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회 출전 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제종합대회(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경기임원 파견은 제14조에 따라 파견하며, 국제대회(UIPM, AMPC 주최대회) 경기임원 파견시에는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의 장이 정한다.

⑥ 국외전지훈련은 대한체육회(체육진흥공단 포함) 지원 및 연맹 사업계획에 따라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 장의 정한다.

제20조(국가대표 선수 자격) ①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본 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연맹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기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행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기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 of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이사회에서 사회적 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13.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장 보 칙

제22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 ① 본 연맹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본 연맹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본 연맹에 등록된 선수
2.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제23조(자료의 보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 ① 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는 체육회 및 본 연맹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대회 및 종목별대회의 국가대표로 확정된 날로부터 대회 종료 후 선수단 해단식 개최 일까지로 한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임기는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대회 2년 주기의 임기를 보장하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거쳐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나 감염병으로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에 대한 재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해임한다.

1. 올림픽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우
2.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여 개인.단체.혼성계주가 실시될 경우 3개 이상, 남.여 개인.혼성계주가 실시될 경우 2개 이상, 남.여 개인전만 개최될 경우 1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우

④ 국가대표 선발전(기록분석 선발 포함)으로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는 차기 국가대표 선발전까지로 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한다.

제25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의무)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3.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5.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7. 국가대표 선수의 합숙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기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②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의무, 체력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영상 및 전력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
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의 이행
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③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제안한 사항의 이행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제2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대표의 보호 및 지원) 체육회와 본 연맹은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수준의 훈련수당 지원
2.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 마련

제28조(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 ① 본 연맹은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본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반드시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본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제·개정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6개월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유에 대해 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국가대표 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강화훈련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부 칙

부 칙<2011.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2011. 2.23.)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1>

제1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선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 규정은 삭제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 (2013. 5.21.)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13. 5.21.)

부 칙<2015. 2.24>

제1조(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및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은 삭제되고 국가대표 선발 규정으로 운영한다. (2015. 2.24.)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2.24.)

제3조(경과조치) 제5조(결격사유)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로 형벌 또는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2015. 2.24.)

부 칙<2017.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9조(국가대표선발)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은 동 규정 개정 후 제1차 선발전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나, 제2차 및 제3차 선발전은 동 규정 개정일 3개월 후에 개최한다.

부 칙<2018.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 ① 이 규정 제21조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 6.25.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제21조제10호는 형법 제246조, 제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 4. 5.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부 칙<2021. 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이 개정된 후 제24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제2항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 재평가에 따른 재임용 적용은 2022년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국가대표 지도자(트레이너 등 포함)로 선발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이 정한 제19조(국제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 기준)제1항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과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발전을 개최한다.

1. 국가대표 선발전은 3회를 실시하되, 감염병과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불참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는 3회를 출전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은 제1차 선발전부터 신청하여야 하고, 파견 선수와 강화훈련은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선발 성적 결과로 경향위 심의.의결로 실시한다.

2. 상기 제1호에 따라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순위는 세계랭킹(PWR) 레벨 1을 적용하되 3차에 걸쳐 실시된 선발전 중 상위 2개 선발전에 각각 50%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가대표 선발 시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3. 제2차 선발전 및 제3차 선발전 참가선수는 제1차 선발전 성적 결과로 24명으로 제한하되, 불가항력적인 일로 참가하지 못한 선수를 포함한다.

부 칙<2022.10.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맹 정관 제15조(이사회의 소집)제7항에 의거하여 개정되는 동 규정 제7조(위원회운영)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통신 수단 등으로 동 규정 개정 전에 개최된 위원회는 연맹 정관과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하여 개최된 것으로 한다.

부 칙<2023.02.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근대5종 국가대표 지도자 공채 서류심사 심의평가표

(응시분야 : / 응시자 :)

항 목		점 수		10		8		6		4		배점	점수	비 고
지도 실적	국제	올림픽	세계선수권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청소년	아시아선수권	유소년		10		- 최고 지도실적만 적용 (국제 또는 국내 택)		
	국내			전국체전		연맹 주최대회								
지도 경력	대표팀	6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 국가대표 또는 팀 지도경력중 택하여 적용		
	일선팀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경기지도자자격증		1급						2급		10		- 근대5종 및 세부종목 (펜싱 등)		
선수경력	대표팀	8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0		- 국가대표 및 팀 선수 경력 택 선택 ※ 일선팀 (총 선수활동기간)		
	일선팀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입상경력	국제	올림픽(10)	세계대회(9)	월드컵(8)	아시안게임(7)	세계청소년	아시아선수권			10		- 최고 입상 경력		
	국내					전국체전		연맹주최대회						
직전 소속단체장 추천서		추천서 제출								10				
총 점(60점)												60		

면접시험채점표

응 시 부 분						
성 명		생년월일				
서류점수(60점)	점					
채 점 요 소	배점	점 수				
1. 지도력 및 리더쉽	10점	- 지도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3	2.5	2	1.5	1
		- 리더쉽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4	3	2	1	0.5
		- 소 통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3	2.5	2	1.5	1
		2. 가치관 및 자질	10점	- 가치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3	2.5			2	1.5	1
- 자 질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4	3			2	1	0.5
- 대처능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3	2.5			2	1.5	1
3. 팀 운영능력 (비전, 방안 등)	20점			- 운영방안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0	8.5	7	5	3
		- 비 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0	8.5	7	5	3
계	40점	점				
합계(서류+면접)	100점	점				
심 사 위 원		(서명)				